##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65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최기상・이건태・이기헌

김정호 · 박상혁 · 박 정

김한규 · 박희승 · 임미애

백승아 · 김성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 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 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시·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관할 지역의 폭염·한파로 인하여 폭염·한파에 직접 노출되 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52조의2(시・도지사의 작업중
	지 권고 등) ①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
	역의 폭염・한파로 인하여 폭
	염・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
	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
	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
	단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사
	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u>다.</u>